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소병훈·정성호·송옥주

문진석 · 서영석 · 이원택

염태영 • 박희승 • 김민석

이수진 • 백승아 • 이언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'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'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

(안 제2조 및 제5조).

법률 제 호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"를 "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"영역별"을 "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 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"노후준비서비스"란 <u>재무ㆍ</u>	2개인		
건강・여가・대인관계 등 분	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		
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	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		
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	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		
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	<u>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</u>		
리 등을 말한다.	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		
	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		
	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		
	한다.		
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	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		
립) ① (생 략)	립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3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	3		
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	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		
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	제적 영역별		
보급 등에 관한 사항	<u>" </u>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(3 ~ ⑤ (생 략)	(· (· (· (· (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	し し し で つ / E ロ /		